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였다(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이란 ombudsman을 의미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해야 한다.

10)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종래의 정간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를 채택했었다. 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으며,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했다.

III.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과제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만을 강조함으로써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한 편에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손

해배상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언론중재위원들이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말한다.

또한 일부 비판론자들은 시정권고의 기능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데다가 시정권고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러한 새로운 언론중재법 논란은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비판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까지 하였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31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쟁점이다.

현행법의 일부 위헌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시정권고제도에 대해 “신문의 사후 검열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정보도를 강제하지 않아도 언론사들이 시정하고 있는데 사소한 필요성 때문에 만든 제도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등 비판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의 언론 통제를 기도하고 있다”, “신문법·언론중재법은 조선, 동아일보 등 보수 일간지를 겨냥해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언론적인 위헌 입법이다”라고 말한다.

한편 이 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감시·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는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제한도 수용해야 한다. 신문법·언론중재법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최소한의 제한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진실인 것처럼 세간에 받아들여지는 데다 언론의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때늦은 정정보도는 독자들이 원보도를 기억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표 7> 위헌 심사관련 주요 쟁점(19개 조항)

위헌주장	주요 법 조항 및 내용	합헌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만으로 3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킴. 진위불명의 모든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정정보도 책임을 지워 단시일에 입증의 힘든 대형 비리 사건의 보도가 어려워짐. 정부가 예로 든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데도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오히려 3개월만에 언론보도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줌. 정정보도청구권은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자신의 비리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p>정정보도청구권 (법 제2조, 14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자유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입법요건을 충족시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잘못된 기사로 인해 업체들이 도산된 사례는 잘못된 보도의 위험성을 보여줌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힘없는 자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언론사에 대항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드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언론중재위가 사후검열기관으로 역할하게 됨.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해당 언론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우려 있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권을 행사할 경우 악용 소지 높음. 언론 규제가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법적 규제 원칙에 위배 됨. 여론형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헌적임. 	<p>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법 제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위원회는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의 침해사항 등을 심의해서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는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적 효력뿐 아무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 침해가 없음. 권고제도가 언론에 위축효과도 주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배상액을 독립적으로 산정하려면, 법원에 준하는 자격과 신분이 보장된 중재위원을 갖추어야 함. 기능 수행의 독립성·중립성과 소송법에 의한 심리 절차도 확보되지 않은 법원에서 할 일을 중재위에 맡긴 것은 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 	<p>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청구권도 관할 (법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임 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는 당사자간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목적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변

며 국민의 사법적 기본권을 침해함.	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등	론이라든가 증거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음.
---------------------	---------------	-----------------------------

출처: 석희태, 2005

참고문헌

권혁남,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 워크숍 발표논문

김서중,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방법,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 워크숍 발표논문

김종배,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 절차, 제주세미나 발표논문, 2005.

석희태,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경기세미나 발표논문, 2006.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실무제요, 2005a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2005b.

이재진, 언론자유와 인격권(서울:한나래, 2006).

조수정,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 워크숍 발표논문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경남중재부 세미나 발표 논문, 2005.